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개별소비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홍남기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, 가격 안정,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1월 12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.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, 그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6. 4. ~ 6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
“2021년 6월 30일”을 각각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 부칙	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 부칙
제2조(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)	제2조(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)
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<u>2021년</u>	① ----- ----- <u>2021년</u>
<u>6월 30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<u>12월 31일</u> -----.
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<u>2021년</u>	② ----- ----- <u>2021년</u>
<u>6월 30일</u>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	<u>12월 31일</u> -----
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	-----
정하여 적용한다.	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1